

## 8. 建築許可制限 期間延長

資料提供：建設部

1. 건설부는 3월 9일에 3월말까지 건축허가제한기로 된 수도권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에 한하여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제외), 근린생활시설(200평이상)에 대한 건축허가제한기간을 '92. 6. 30로 연장 조치하였음.
2. 또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하여 '92. 6. 30까지 기제한되고 주택중에서 안전도에 위해가 있는 주택, 수해상습지역에 위치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등의 개축이 불가하여 도시서민의 주거불편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건설경기진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기해제 조치할 것임.
3. 동 조치의 배경은 최근의 건설경기동향을 분석한 결과, 금년 1월의 건축허가면적이 전년동기대비 27.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월의 경우 잠정추계한 결과 전년동월에 비하여 15.3%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1~2월 전체로 볼 때 5.4%증가추세이므로 건설경기과열 현상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 이의 진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